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인동장씨종중의 화물공영차고지 편입 토지의 잔여부지는 맵지가 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향후 공원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거점소독시설 설치

연중 상시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는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소독과 차단방역으로 질병유입의 방지 및 조기 근절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 산27-3번지

○ 대 상 : 잔여토지 24,837㎡(7,513평)

○ 사업기간 : 2019년

○ 기준가격 : 288백만원(공시지가)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남구미 IC) 인근
- 기 간 : 2014 ~ 2020년(7년간)
- 사 업 량 : 43,213m²정도
- 사 업 비 : 194억원(국비 136, 시비 58)

□ 거점소독시설 설치

○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756, 757, 758번지

○ 대 상 : 토지 7,332m²(2,217평), 거점소독시설 1식

○ 사업기간 : 2019년

○ 기준가격 : 784백만원

- 토 지 : 198백만원(공시지가)
- 거점소독시설 : 586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거점소독시설(차량전용 세차시설, 터널식소독기, 대인 소독기, 기타 사무실 등) 설치

4.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 먼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오태동 산 27-3번지의 잔여부지가 맹지로 되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향후 공원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여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설치」 건으로 선산읍 동부리 75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차량전용 세차시설, 터널식소독기 등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비 784백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내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